

의안 번호	1779	【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1. 6. 3.(화)
- 발 의 자 : 노세영의원 외 6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3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방연마스크 비치장소(안 제3조)
- 교육지원(안 제4조)
- 홍보 및 예산지원(안 제5조~제6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2조
-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
- 「의료법」 제3조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무에 근거하여

- 공공기관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·보육시설·아동·장애인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연기질식 방지를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과 화재예방 및 대피를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하여

-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※ 조례 제정 현황(2021. 7. 1. 기준)

- 울산시 5개 자치구 중 (북구 2020. 5. 7. 제정)
- 전 국 총 54개 시·군·구 제정